

[언어지원법 재천명](#)

2011년 2월 25일 [트레이시 루소](#) 작성

비상 시든 일상 업무든, 정부 기관에서는 일반 대중 모두와 항상 소통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,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유행성 조류독감,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, 멕시코 만 기름 유출, 2010년 10년 주기 인구조사 등과 같은 사건은 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효과적인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.

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의 필수성을 인식한 클린턴 대통령은, 2000년 8월, [행정명령 제 13166 호](#)(PDF 파일)를 발하여, 각 연방정부 기관이 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및 실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 또한 동 명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을 지원할 때에도,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 6편에 있는 국가 출신별 비차별 조항에 따라, 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, 연방기관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2006년 연방정부의 언어지원 실태 조사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이 모두 동 언어지원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연방정부기관의 언어지원에 관한 2010년 4월의 연방 감사원 보고서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, 동 감사원은 연방정부가 행정명령 제 13166호를 더 잘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. 더욱이, 연방정부 기관 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개최된 언어지원 회의에서 밝혀진 사실은, 연방정부는 전반적으로 몇몇 분야에서는 언어지원 제공을 하는데 상당히 큰 발전을 보여 주었지만, 포괄적인 언어지원 프로그램 실행은, 자원과 인력 제한 문제로, 각 연방정부 기관 사이에, 또 연방자금지원 수혜자들 사이에,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

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영어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지원 제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[각 연방정부 기관이 행정명령 제 13166 호](#)(PDF 파일) 이행을 재천명하도록 [공문](#)을 발표했습니다. 동 공문은 정부기관들이 언어지원 개선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 단계에 관한 개요와 민권국에서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[행정명령 제 13166 호와 언어지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.](#)